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
----------	-----

제출년월일 : 1998.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 직명 변경
-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 추가지정

2. 주요골자

- 당연직(위원장)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직명 변경
- 관계법령 제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따른 법률)에 따라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 추가 지정
- 위원회 결정사항중 삭제된 조문의 정리

3. 의안전문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별첨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부지사” 를 “행정부지사” 로 “제12호” 를 “제7호” 로 한다.

제3조중 “제7호 및 제8호” 를 “제4호내지 제5호” 로 하고 “제10호” 를
“제6호” 로 하며 “제12호내지 제21호” 를 “제7호내지 제16호” 로 한다.

제3조 관련 제7호(종전 제12호)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분야별	위원회명	근거규정
내무	1. 제안심사위원회 2. 정보공개심의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사회복지	1. 지방구호협의위원회 2. 생활보호위원회 3. 가정의례심의위원회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 생활보호법 제16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
농정	1. 화전정리심의위원회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3조